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《 국립치매센터의 설립 등 》

■ 전진숙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5711호)

2026. 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동찬

목 차

I . 개요	1
II . 검토의견	3

I. 개요

1. 제안경위

가. 제 안 자 : 전진숙의원 등 12인

나. 제 안 일 : 2025. 12. 30.

다. 회 부 일 : 2025. 12. 3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%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,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.

이로 인한 사회·경제적 부담은 급증하고 있으며, 2025년 기준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4조 원 규모로 추정되어 국내총생산(GDP)의 약 1.1%에 해당함. 향후 치매 관련 비용은 GDP 대비 최대 3.8%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음.

현행 「치매관리법」에 근거한 중앙치매센터는 위탁 운영 형태로 존재하나, 조직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가 치매정책의 종합적 연구·기술개발·임상시험·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치매관리기관인 「국립치매센터」를 설립하여, 치매의 예방·진단·치료·돌봄 전주기

에 걸친 연구와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/분석, 노인성뇌질환 연구중심 병원 운영, 표준 돌봄 모델 개발, 의료-복지-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구축, 헬스테크 기업의 제품·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제공, 의료·심리·가족 지원을 포괄하는 치매 돌봄인력 교육·훈련 제공 등 치매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치매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6조 개정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,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등 치매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 등).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략) 5. “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 가. 제16조의 <u>중앙치매센터</u> 나. ~ 바. (생략) 6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--. 가. ----- <u>국립치매센터</u> 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 6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자료제공의 협조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<u>치매환자</u> 를 진단·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	제15조(자료제공의 협조 등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치매센터, 치매환자</u> ----- ----- -----

보험심사평가원, 관계 중앙행정
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
공공기관의 장, 그 밖에 치매에
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·단체
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
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
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
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
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
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
따라야 한다.

1. ~ 9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6조(중앙치매센터의 설치) ①

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
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
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
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

2.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

3.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

4. 치매연구사업 지원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. It features ten identical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. The background is white, and the lines are light gray.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on the page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국립치매센터의 설립) ①

치매관리사업을 통합적으로 수
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치매
센터를 설립한다.

② 국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
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
국립치매센터의 설립에 필요한
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
할 수 있다.

③ 국립치매센터는 법인으로
한다.

④ 국립치매센터는 주된 사무

5.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·훈련 및 지원 업무

6.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

7.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

8.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의 지원

9.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

10.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

11.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
12.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
13.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

14.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

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⑤ 국립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

2.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

3.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

4. 치매연구사업

5.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·훈련 및 지원 업무

6.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

7. 치매등록통계사업

8.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9.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

10.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

11.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
12.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
13.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

14.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

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비용의 지원) ① 국가와
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
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
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
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
1의2. 제16조, 제16조의2 및 제
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,

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업무

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
립치매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
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
수 있다.

⑦ 국가는 국립치매센터의 설
립·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하
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
유재산법」 제32조에도 불구하
고 국유재산을 국립치매센터에
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
익하게 할 수 있다.

⑧ 국립치매센터에 관하여 이
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
한 법률」에서 정한 것 외에는
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
규정을 준용한다.

제18조(비용의 지원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-----

-----국립치매센터----

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 1의3. ~ 4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----- 1의3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

□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%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,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가 970,759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.

이로 인한 사회·경제적 부담은 급증하고 있으며, 2025년 기준 치매환자 총 관리비용은 26조 9,000억원로 추정되고 있음.

< 추정 치매 환자 수 및 치매 관리비용 장래추계(2023~2070) >

(단위: 명, %, 조원)

구분	2023	2024	2025	2030	2050	2070
65세 이상	9,462,270	9,955,476	10,585,254	13,056,326	19,681,892	17,677,335
추정치매환자	867,803	910,898	970,759	1,212,315	2,258,915	2,238,013
(유병률)	(9.2%)	(9.1%)	(9.2%)	(9.3%)	(11.5%)	(12.7%)
치매관리비용	22.9	24.6	26.9	38.6	125.0	215.2

* 치매관리비용=직접의료비+직접비의료비(간병비용·시간)+장기요양비용+간접비(환자생산성손실)

* 자료: 「대한민국 치매현황 2024」

□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에 따라 치매관리정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중앙치매센터는 2021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되어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지원 및 치매연구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< 중앙치매센터 운영 현황 >

◦ 주요업무

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(중앙치매센터의 설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
2.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
3.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
4. 치매연구사업 지원
5.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·훈련 및 지원 업무
6.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
7.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
8.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의 지원
9.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
10.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
11.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12.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13.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
14.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◦ 예산(2025): 72억원

- 국가치매관리 39.5억원, 치매상담콜센터 15.9억원, 공공후견지원 3.6억원, 치매안심센터시스템 5.7억원, 치매전문교육 3.7억원, 국립요양병원 기술지원·성과관리 3.2억원

◦ 조직: 1센터장, 1부센터장, 9팀

◦ 주요연혁

- ('12.7월)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에 '중앙치매센터' 지정 및 설치
- ('13.12월) 중앙치매센터에서 '치매상담콜센터'를 동시 운영
- ('19.12월)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
- ('21년 6월) 「치매관리법 시행령」제11조의3(중앙치매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¹⁾ 개정에 따라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
- ('22.3월)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조직 이관

* 자료: 보건복지부

1) 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조의3(중앙치매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(이하 “국립중앙의료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- 중앙치매센터는 위탁운영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치매정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, 치매정책의 종합적 연구·기술지원·임상시험·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-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「치매관리법」에 국립치매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연구 및 빅데이터 수집·분석, 치매 돌봄인력 교육·훈련 제공 등 치매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경우,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치매관리 역량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다만,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.
- 우선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립치매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(안 제16조제2항),
「국민건강증진법」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을 금연교육 및 광고, 건강생활의 지원사업,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, 보건통계 작성·보급 등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(동법 제25조).

「국민건강증진법」
제25조(기금의 사용 등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 1. 금연교육 및 광고,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, 절주교육 및 광고,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.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.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. 보건통계의 작성·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·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

5. 질병의 예방·검진·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
6. 국민영양관리사업
7. 신체활동장려사업
8. 구강건강관리사업
9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
10.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·장비의 확충
11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
12.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²⁾이 정하는 사업

□ 다음으로 개정안은 국가가 국유재산을 국립치매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(안 제16조제7항),

국유재산의 사용료, 대부료,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의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고, 국유재산특례는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별표에 규정된 법률만 허용하고 있는바,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.

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국유재산특례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.

1.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제1항,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, 대부료,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(이하 “사용료등”이라 한다)의 감면

제4조(국유재산특례의 제한)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.

2)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

제30조(기금의 사용)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
2.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·훈련사업
3.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
4.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
5.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
6. 절주문화 조성 사업

□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
- 보건복지부는 위탁운영 중인 중앙치매센터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전문성의 약화 우려, 추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- 기획예산처는 국립치매센터를 별도로 설립할 경우 기능 간 연계성이 약화되어 종합적 정책추진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.
- 국립중앙의료원은 개정안이 요구하는 치매관리 기능은 독립기관 신설이 아닌,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된 중앙치매센터의 기능 정비 및 단계적 고도화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임.
-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시스템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내실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임.

<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>

부처명	개정안에 대한 의견
보건복지부	○ 위탁운영 중인 중앙치매센터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전문성의 약화 우려, 추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 필요 - (전문성 약화) 독립된 법인 설립은 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을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활용이 어려워져 전문성 약화 우려 - 현재 중앙치매센터를 위탁·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 관련 전문인력, 임상·연구·교육 인프라 등을 보유하여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·전문적으로 수행 가능 - (추가 재정부담) 개정안에 따라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해 인력·시설의 신규확보 등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어 추가 재정부담 발생 - (유사사례) 응급의료 관련연구, 종사자 교육,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응급의료센터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

부처명	개정안에 대한 의견
	기관(국립중앙의료원)에 위탁 운영
기획예산처	○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·운영한 것은 진단·예방·치료·연구 등 의료원이 보유한 치매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함 - 국립치매센터를 별도로 설립할 경우, 기능 간 연계성이 약화되어 종합적 정책추진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
국립중앙의료원	○ 개정안이 요구하는 치매관리 기능은 독립기관 신설이 아닌,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된 중앙치매센터의 기능 정비 및 단계적 고도화를 통해 달성 가능 -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를 비롯, 파킨슨병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뇌질환을 포괄적으로 치료·관리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어 치매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
대한의사협회	○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법인으로 격상·신설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야기 우려, 국민건강기금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기금재정 운용(설립비용 지원 등), 다른 질환관리에 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선례로 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시스템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내실화 하는 것이 합리적

문 의 처

02) 6788-5499